

인제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

우리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는 정규 교과목(전공선택)으로 P/F이 아닌 평점 부여 방식으로 단기(4주/5학점), 중기(8주/9학점), 장기(13주 이상/15학점)로 운영되고 있음.

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

※ 교육부의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전부개정(2021. 7. 6. 시행)에 근거

구분	항목	내용	교육부 고시 관련 근거								
1	실습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습기관의 근무제(주 5일, 일 8시간 등)에 따라 월 단위로 운영 실습시간의 10~25% 이하 교육 시행 	5조, 21조								
2	실습 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습생의 직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, 최저임금의 75% 이상 지급 의무 - 2024년 기준 월 1,545,555원 이상 ○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※ 붙임 5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」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, 공문 확인 	22조								
3	학생 보호 (안전강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습생 대상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- 실습 개시 15일 내 가입(근로복지공단) 후 증빙 서류 대학에 제출 ○ 대학은 현장실습 보험 가입(상해) ○ 휴일 사용: 1개월 실습 시 1일의 유급 휴일 적용, 휴일(공휴일 포함)은 출석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유급 휴일로 인정 	18조								
4	재택실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재난(질병)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○ 원칙적으로 실습 기간의 1/4 범위 내 인정되나,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 가능 	16, 27조								
5	실습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준 서식 사용: 운영계획, 협약서, 출석/평가표 등 ○ 실습기간 중 중간점검 실시: 실습기관 현장방문(학생 및 담당자 면담) ○ 신규 실습기관: 사전점검서 	9, 12, 14조								
6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습기관은 전담 지도 인력(멘토) 배치하여 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 관리, 수행평가 등 실시 	4, 16, 17조								
7	지원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실습학생에게 선지급 100% 진행시 대학은 교육시간 비례 10~최대 25% 실습 종료 후 월 기준 지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산출 내역 예시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2024년</th> </tr> <tr> <th>실습기관</th> <th>대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선지급 100%</td> <td>교육시간 비례 최대 25%</td> </tr> <tr> <td>2,060,740</td> <td>515,18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해시 일자리 지원사업: 김해 소재지 기관 실습 종료 후 월 기준 25% 지원 	2024년		실습기관	대학	선지급 100%	교육시간 비례 최대 25%	2,060,740	515,185	
2024년											
실습기관	대학										
선지급 100%	교육시간 비례 최대 25%										
2,060,740	515,185										

실습기관의 준수 사항

연번	준수 내용
1	실습생 선발은 반드시 대학을 통해 진행(학생 개인섭외, 조기취업 등을 통한 실습 불가) (실습기관) 대학에 참여신청서 제출 ⇨ (대학) 실습생 모집 ⇨ (실습기관) 실습생 선발
2	실습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(실습개시 15일 이내 가입 후 확인서 대학 제출)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75% 이상 부담(2024년 최저지급 9,860원) - 24년 기준 실습기관 선지급(100%) 2,060,740원/월 ⇨ 대학 실습기관에 후지급(25%이하) - 실습지원비의 경우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, 기타소득처리 하지 아니함.
4	실습학생에 대한 지도인력(멘토) 배치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석부(서식) 제출과 출근부 관리(대학운영시스템(OJT) 등록) 병행 - 주간업무일지와 종합보고서, 수행태도 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(멘토) 평가(40점 만점)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신청서 및 지급 계좌, 사업자등록증 제출 - 기업멘토비 지급: 멘토비 신청서, 멘토 담당자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 제출 - 교육부 출석부 및 평가표, 이체내역확인증 제출